

# 연말연시 특별방역 (12.24. ~ 1.3.)

English

GO



질병관리청



코로나19 현황

사회적 거리두기

지원정책

코로나19 알림

확진자 이동경로

사회적 거리두기

종합안내

공지사항

확진자 현황

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

기업지원시책

코로나19 Q&A

주요집단사례

마스크 착용 의무화

정부지원

마스크 의무화 Q&A

확진자 추세

마스크 사용 캠페인

인터넷 방역단

선별진료소

부산시 상황보고

예방행동수칙

클린존 (방역안심시설)

부산 국민안심병원

일자별 현황

자가격리자 행동수칙

가족/동거인 행동수칙

부산 호흡기전담클리닉

가족/동거인 행동수칙

코로나19 심리지원

코로나19 신고

홍보(서식·앱) 다운로드

1월 2일 (Sat) 10시 발표



| 지역  | 중구  | 서구  | 동구   | 영도구 | 부산진구 |
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
| 금일  | -   | 1   | -    | -   | -    |
| 누적  | 19  | 55  | 66   | 37  | 214  |
| 동래구 | 남구  | 북구  | 해운대구 | 사하구 | 금정구  |
| -   | -   | -   | -    | -   | 1    |
| 175 | 121 | 156 | 176  | 120 | 81   |
| 강서구 | 연제구 | 수영구 | 사상구  | 기장군 | 기타   |
| -   | 1   | 1   | 1    | -   | -    |
| 43  | 97  | 84  | 157  | 36  | 308  |

13시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.



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브리핑(20.12.23.)



코로나19 전국 현황 자세히 보기



## 사회적 거리두기

###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(12.24. ~ 1.3.)

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



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설별 방역지침

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숙박시설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,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</li> <li>▲ 객실의 50% 이내 예약 제한 추가</li> <li>▲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</li> </ul>  |
| 식당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5인 이상 예약·동반 입장 금지 등 ▲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</li> <li>※ 2020.12.31.(21시) ~ 2021.1.1. (09시) :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/ul>  |
| 영화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1시 ~익일 05시 운영 중단 ▲ 좌석 한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</li> </ul>  |
| 공연장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좌석 두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</li> </ul>  |
| 백화점·대형마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발열체크,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, 집객행사 금지,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</li> </ul>  |
| 겨울스포츠 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집합금지 (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)</li> </ul>  |
| 종교시설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 허용(비대면 준비 인력 포함 20명 이내) ▲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</li> </ul>  |
| 기타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해님이 해맞이 등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</li> <li>▲ 7개 해수욕장, 호안 도로, 인근공원, 공영주차장 폐쇄 (12월 31일 12시부터 1월 1일 09시까지)</li> <li>▲ 황령산, 금정산, 이기대 등 주요 등산로 산책로 출입통제</li> </ul> |

### (원칙)2.5단계 + (추가)일부 방역수칙 강화 (12.15. ~ 1.3.)



구분

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
| 구분    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|--|--|
| 중점관리시설 | 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▲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 실시</p> <p>*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고시(제2020-531호) 병행 적용</p>  |
|        | 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      | ▲ 집합금지   |
|        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▲ 집합금지   |
|        | 노래연습장  | ▲ 집합금지   |
|        | 실내 스탠딩 공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▲ 집합금지   |
|        | 식당   | <p>▶ 5인부터 예약,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</p> <p>*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, 결혼식,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(다만, 직장 회식은 금지)</p> <p>▶ 21시 ~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p> <p>▶ 브런치카페, 베이커리카페*,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·배달만 허용</p> <p>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</p> <p>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</p> <p>▶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p> <p>■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</p> |
|        | 카페 (무인카페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(카페)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</p> <p>■ (프랜차이즈형 카페)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</p> <p>-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[커피 외] 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</p> <p>■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</p> <p>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</p> <p>■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</p>  |
|        | 홀덤펍  | ▲ 집합금지   |
|        | 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<br>※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| <p>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(300㎡ 이상 상점·마트·백화점 제외)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</p>  |
|        | 실내체육시설   | ▲ 집합금지   |
|        | 실외 겨울스포츠시설<br>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                 | ▲ 집합금지   |
|        | 결혼식장 /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▲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|
|        | 목욕장업   | <p>▲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</p> <p>▲ 음식 섭취 금지</p> <p>▲ 사우나·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</p>  |
|        | 영화관  | <p>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p> <p>▲ 좌석 한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</p>  |

| 구분             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|  |
|-----------------|---|--|
| 일반관리시설          | 공연장   | ▲ 좌석 두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  |
|                 | PC방 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미성년자 출입금지<br>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br>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  |
|                 | 오락실·멀티방 등 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음식 섭취 금지<br>▲ 시설 면적 8m <sup>2</sup> 당 1명 인원 제한  |
|                 | 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직업 훈련기관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시설 면적 8m <sup>2</sup>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br>▲ 음식 섭취 금지<br>▲ 관악기·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<br>*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, 다만 '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|
|                 | 독서실·스터디카페 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br>▲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<br>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  |
|                 | 놀이공원·워터파크 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수용가능인원의 1/3 인원 제한   |
|                 | 이·미용업 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8m <sup>2</sup>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|
|                 | 백화점·대형마트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br>▲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<br>▲ 집객행사 금지<br>▲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  |
|                 | 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(300m <sup>2</sup> 이상)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br>▲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|
|                 | 편의점   | 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<br>■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<br>■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|
| 포장마차(음식조리·판매시설) | ▲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  |  |
| 기타시설            | ▲ 이용인원 제한(4m <sup>2</sup> 당 1명 등)   |  |
| 국공립시설           | (국공립시설)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<br>■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이용인원 30% 제한 유지<br>■ 다만,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|  |

| 구 분            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|
|-----------------|--|
| 숙박시설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객실 수의 50% 이내로 예약 제한</li> <li>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</li> <li>■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</li> <li>■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</li> <li>■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</li> </ul> |
| 파티룸             | ▲ 집합금지   |
| 해맞이·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| ▲ 최대한 폐쇄   |
| 사회복지이용시설        | ▲ 이용인원 30% 이하로 제한(최대 5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|

##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| 구 분        |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  |
|------------|---|
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<p>▲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</p> <p>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·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</p>  |
| 모임·행사      | <p>▲ 5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</li> <li>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</li> </ul> <p>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</p> <p>(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<br/>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<br/>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사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</li> <li>■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</li> </ul> |
| 스포츠 관람     | ▲ 무관중 경기  |
| 교통시설 이용    | <p>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</p> <p>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</p> <p>▲ KTX·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</p>  |
| 등 교        | ▲ 밀집도 1/3 준수  |
| 종교활동       | <p>▲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(참여인원 20명* 이내) 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</p> <p>*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·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(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·송출인력, 참여 신도 등)</p>   |
| 기타활동       | <p>▲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센터 등) 운영 중단</li> </ul>   |
| 각종 동호회 활동  | <p>▲ 비말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탁구·배드민턴·축구·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·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</li> <li>■ 댄스동호회,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</li> </ul>  |

| 구분    |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  |
|-------|---|
| 직장근무  | <p>▲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</p> <p>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</p> <p>▲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*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p> <p>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</p> |
| 행정명령  | <p>▲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-별도 해제시까지</p> <p>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</p> <p>▲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06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) : 2020.12.14</p> <p>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36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2.28</p>              |
| 위 반 시 | 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|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10편]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의 하루





라바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해요!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9편] 부산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생겼DAY~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8편]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생기는 일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7회] 우리의 지구를 부탁해 똑똑한 슬기로운 집콕생활!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6편] 부산 BMW 믿어도 되나??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5편] 힘내세요 만덕씨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4편] 역학조사관의 오해와 진실! 부산시 역학조사반은 어떤 일을 할까?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3편] 뭐? 이거벗으면 과태료 부과?!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2편] 동선 숨기고 자가격리 거부?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







[코로나 뭘든 알리 줌 1편] 열나고 기침도 난다! 나도 혹시 독감? 코로나?

